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7
----------	-----

제출년월일 : 200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첨삭하여 도매시장의 적법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를 청과부류 20억원, 수산부류 5억원으로 함 (안 제10조).
- 나.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을 5,000만원으로 함 (안 제11조).
- 다. 중도매인의 상한수를 청과부류 140명, 수산부류 60명으로 규정함 (안 제26조).
- 라.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청과부류는 개인2,500만원, 법인5,000만원으로 수산부류는 개인 2,000만원, 법인4,000만원으로 함 (안 제27조).
- 마. 시장도매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6조 내지 제49조).
 - 시장도매인의 상한수 : 청과부류 9개법인, 수산부류 6개법인 (안 제36조).
 - 자본금 규모 : 청과부류 5억원이상, 수산부류 5억원이상 (안 제40조).
 - 시장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규정 (안 제41조).
 - 청과부류 : 5억원
 - 수산부류 : 2억5천만원
 - 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 운전자금확보, 장부비치 등 (안 제42조 내지 제45조).

바. 출하자 등록절차를 규정함 (안 제52조).

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67조).

아. 도매시장내에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2조).

자.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배추·마늘 등 6개품목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출하 하거나 동 품목을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재 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톤당 2,000원 ~ 10,000원의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4조).

개정조례안 : 별 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입법예고 : 2001. 4. 28 ~ 5. 8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의견 자료수집 : 2000. 9. 18

○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 2000. 9. 27

○ 조례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 설명회 및 공청회 : 2001. 5. 4

기타 참고사항

○ 농림부 표준안 시달 (시장51160-222(2000. 6. 27)호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면 적 (㎡)	
		대 지	건 물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안산시 이동 528번지	42,499.47	19,987.6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일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또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젓갈류·활어류중 신선한 것 또는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 ①도매시장은 다음 각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 1. 청과부류 :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신정부터 2일간, 설날·추석부터 3일간
- 2. 수산부류 :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신정부터 2일간, 설날·추석부터 3일간

②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련동 및 관리동은 20:00시까지로 한다.

구 분	개 장 시 간
하 절 기	01:00 ~ 19:00
동 절 기	01:00 ~ 17:00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판장의 관리운영조례 적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 ①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 1. 청과부류 : 2개도매법인
- 2. 수산부류 : 2개도매법인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절차) ①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3. 임원의 이력서
-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 범위안에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도매시장법인이 지정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 지정기간동안의 당해 법인에 대한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의 평가 및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요건) 시장은 도매시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외에 타 자치단체에서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같은 부류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복하여 임원으로 겸직중인 자의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임원자격에 대하여 추가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20억원
2. 수산부류 : 5억원

제11조 (보증금 납부) ①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도매업무를 할 수 없다.

⑤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전자금 확보) ①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거래예상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자금의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 (장부비치) ①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장부(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비품대장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같음할 수 있다.

③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제5호에 규정한 장부(서류)에 대하여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영업무) ①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업무를 수행중인 도매시장법인에게 경영사업의 추진상황등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상장수수료) ①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의 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이내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이내

②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정하여 위탁상장수수료를 인할 수 있다.

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도매시장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매사의 의무)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행위

2. 낙찰자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를 조작하는 행위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경매후 경락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제19조 (경매사의 수)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경매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거래실적(전년도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의한 당해 연도 예상거래량)에 의한다.

제20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시설여건·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영업보고 및 검사) ①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당일의 입하량 및 거래실적은 당일 오후2시까지, 월별거래실적은 익월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 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업무 및 회계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자료제출 및 그 업무의 검사를 요구할 경우 시설의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휴·폐업신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도매인

제23조 (허가절차) ①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중도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에 한한다.

1. 이력서

- 2. 은행의 잔고증명서
- 3. 정관
-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5. 임원의 이력서
- 6.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 ②중도매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상한수 범위안에서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도매인을 허가할 수 있다.
- ③중도매업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중도매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허가증을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중도매인의 재지정) ①중도매인이 허가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재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 허가기간동안의 당해 중도매인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허가조건) 시장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할 경우 도매시장내의 거래질서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6조 (중도매인 수) ①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부 류		상 한 수
청 과 부 류	과 일	70
	채 소	70
수 산 부 류		60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거래현황·중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수 범위안에서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 류	금 액
청과부류	개인 2,500만원, 법인 5,000만원
수산물부류	개인 2,000만원, 법인 4,000만원

제28조 (시설사용면적 우대)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면적의 배정 등에 있어서 해당 중도매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29조 (보증금 납부) ①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정산조직의 설립 등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납부 또는 담보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③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정산하고 정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중도매인은 변경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증금 관리) ①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미수금정리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중개수수료) 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 자로

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제32조 (중도매법인의 관리) ①법인인 중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국세 징수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도매시장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경매참가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 금지) ①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조합(단체)의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의 명부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중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조합(단체)이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의 조합(단체)이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당해 조합(단체)의 해체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35조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도매업 업무를 개시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이를 재개할 때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제4장 시장도매인

제36조 (상한수) ①시장도매인의 상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9개 법인
2. 수산부류 : 6개 법인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서 정한 상한수의 범위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 (지정절차) ①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에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 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43조 및 제45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의 상한수 범위안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①시장도매인이 지정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 지정기간동안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 (임원의 요건) 시장은 도매시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도매인의 임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외에 타 자치단체

에서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같은 부류의 시장도매인과 중복하여 임원으로 겸직중인 자의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임원자격에 대하여 추가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5억원

제41조 (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2억5천만원

제42조 (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에서 정한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일평균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 (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

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44조 (운전자금 확보) ①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당해 분기 개시후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도매인은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도매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45조(장부비치) ①시장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 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판매기록부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에는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시장도매인은 제1항제5호에 규정한 장부(서류)에 대하여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시장도매인의 관리) ①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휴·폐업 신고) ①시장도매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시설여건 및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지정취소)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령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시장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장 매매참가인

제50조 (매매참가인등록 및 관리) ①법 제2조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1조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등록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자격을 인정하며, 타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2조 (출하자 등록)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불량출하자 제재방법) 시장은 속박이·수량·중량 등 품질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검사제도 등을 실시하여 불량출하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54조 (매매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매수도매거래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시장도매인이 제3항의 거래중 매수 또는 중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매수대금지급일·중개대상자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표준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5조 (중도매인 등의 다른 도매시장법인 경매참여) ①중도매인 또는 매매참

가인이 소속된 도매시장법인이외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매참여 2일전까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경매참가신청서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소속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아닌 자가 경매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개시 1일전까지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미수금의 관리)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미수금 내역을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월별거래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 (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여를 거부하거나 경매참여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

②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물량이 소량인 농수산물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농수산물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

예외품목거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은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상장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조례 제14조, 제67조 내지 제70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상장예외품목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 (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경우 그 가격은 당일 동일품목, 동일등급의 거래가격중 최고가격으로 한다.

제60조 (대량입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렛트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등 포장출하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1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특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거래특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특례거래를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표준경매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희망 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서명·입찰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8호서식의 거래성립 최저가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 (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상경매를 실시하는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해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 성명·품명·등급·수량 기재)
-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품명·등급·수량 등 기재)
- 4. 경매실시
 -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집합
 -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 라. 경매사가 출하지역·출하자·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및 필요한 사항 호창
 -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가격 제시
 -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금액 기재)

제64조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①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상황 또는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 (판매원표 관리) ①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9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 (경락물품의 반출) ① 중도매인은 경락받은 물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당일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잔품도 3일이내에는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처분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경매 참여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8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고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이상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출하자손실보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보전금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0조 (유통정보 공개 등 신용관리) ①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일일시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의거 거래의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71조 (대금결제) ①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67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로 부터 대금지급청구가 있을 경우 제1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납부한 보증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할 수 있다.

⑤상장에의품목취급 중도매인이 출하자에게 대금결제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지체상금) 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결제대금을 대신 지급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 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3조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시장은 제11조 및 제42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74조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법 제7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 (시장사용료) ①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고지하는 사용료 총액은 각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간 거래총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한다.

1. 부류별 시장사용료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한다.
2. 부류별 시장사용료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간 거래금액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 별표1에 의한 도매시장의 시설기준중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과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77조 (시설사용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납부하는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인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78조 (거래관계자의 표시) 도매시장내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별표 3에 의한 거래참가증 및 거래관계자표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79조 (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그 거래된 품목·물량·가격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0조 (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및 수탁을 할 수 없다.

제81조 (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채소류등 상관습상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부적절한 품목인 경우에는 시장은 거래관습에 따라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시장은 도매시장내에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수산물의 출하주에 대하여는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8장 시장 시설

제83조 (시설의 용도지정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부속업자 등 도매시장시설 사용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면적·사용기간 및 기타 사용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4조 (시설의 양도·전대금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없이 양도·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5조 (관리비 등의 징수) ①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제1항의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납기마감 7일전까지 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납기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76조, 제77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제사용료(부담금)의 징수에 준용한다.

제86조 (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기타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공작물(천막포함)설치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7조 (시설의 반환) 시설사용자가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상속인·청산인·대리인등 이해관계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8조 (시설사용 관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도매시장의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목적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 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신축·증축·개보수·공작물(천막포함)설치·멸실·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7.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89조 (대집행) 시설사용자가 제87조 및 제88조에서 정한 의무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0조 (시설의 관리책임)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 및 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1조 (시설의 처분 제한) 시장은 도매시장의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도매시장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92조 (편익업소)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거래 관계자 등 도매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도매시장내에 편익업소를 둘 수 있다.

제9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93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유통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각 도매시장법인대표 각1인과 각 도매시장법인별 채소·과일·수산부류 취급 중도매인 대표 각1인으로 한다.
- ④위촉직위원은 유통관련전문가, 농어민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도매시장입주업체의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매시장 운영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9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9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7조 (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99조 (개선조치 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 또는 회계 등 기타 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0조 (도매업무의 대행) ①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그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도매업무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101조 (장비의 확보)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근용 저울·전산처리장비·방송시설·메가폰·경매대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확보해야 한다.

제102조 (표준하역비 부담)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 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촉진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격출하품으로 정하기 곤란한 농산물의 하역비에 대하여도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3조 (도매시장의 출입) ①도매시장 이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도매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운반 등에 있어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04조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시장은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 등 포장규격기준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요 율 (원/톤)
마 늘	10,000
배 추	10,000
무·양 배 추	2,000
대 과	2,000
양 과	2,000

③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내에서 다듬기·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한다.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하 중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담금징수액의 5퍼센트이내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환경위원회 지원사업
2. 출하자나 출하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 지원사업
3.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장려금지원, 시장시설개선, 장비구입 및 교육·홍보사업
4. 쓰레기감량화·규격출하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5조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 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106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 유통인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규칙 제56조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07조 (벌점제도) ①시장은 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기타 도매시장관련 유통종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평가 및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점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10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4항중 제69조 및 제75조를 준용한 상장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의 정산창구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허가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그 지정·허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매시장 입주지정·허가 신청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관 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관리사무소장 정 점 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운 영 담 당 노 재 달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구 범 (행정 2772)

【별표 1】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기준표

○ 청과부류

구 분	5천톤미만	5천톤이상 ~ 3만톤미만	3만톤이상 ~ 7만톤미만	7만톤이상 ~ 10만톤미만	10만톤이상 ~ 20만톤미만	20만톤 이상
경매사 수(명)	2	3	5	7	9	매3만톤 마다 1명 추가

○ 수산부류

구 분	1,000톤미만	1,000톤이상 ~ 5,000톤미만	5,000톤이상 ~ 10,000톤미만	10,000톤이상 ~ 50,000톤미만	50,000톤이상
경매사 수(명)	2	3	4	5	매 10,000톤 마다 1명 추가

【별표 2】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

품 목		경매개시 시각	경매장소
청과부류	과일류, 채소류	채소 : 01:00~ 과일 : 05:00~	청과동
수산부류	수산부류	05:00~	수산동

【별표 3】

거래관계자의 표지

(거래참가증)

<앞면>

거래참가증 (1)		
	사 진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2)		

<뒷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 . . 안 산 시 장 (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3. 개설자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개설자에게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가로 70mm × 세로 100mm

-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 표시)

거래관계자	표지구분	바탕 색	표지 글씨
경매사	모자	곤색	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도매인	모자	주된 경매 참가 가도매법인별	앞면에 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	모자	표시	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 규격, 색깔, 글씨 등은 개설자가 시장별로 별도 정함

【별지 제4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법인명:)

년 월 일

부류	품목	거래실적(당일)		상장경매실적		거래실적(누계)		비고
		물량 (M/T)	금액 (천원)	물량 (M/T)	금액 (천원)	물량 (M/T)	금액 (천원)	
	합계							
과 실 류	사과							
	배							
	· · · · ·							
	· · · · ·							
채 소 류	수박							
	참외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월별거래실적 보고서

(기간: ~)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	성명	상호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잔액	담보금액

【별지 제6호서식】

휴 · 폐업 신고서

신청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대 표 자	
	주 소			
휴 · 폐업기간		사 유	공 시 방 법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2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휴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허가번호		중도매업허가증			(사진부착) 가로3cm×4cm
신 청 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형 태	개인·법인	
허가사 항	참가도매시장명				
	거 래 품 목				
	허 가 기 간	부 터 까 지 (년간)			
<p>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p> <p>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및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안 산 시 장 ①</p>					

【별지 제13호서식】

매매참가인 등록 신청서

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업무대행자		주민등록번호
청	주 소			
	참가시장명			
인	도매시장법인명		도매시장 법인확인	(인)
	취급부류 (주품목)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 (2.5 x 3.5cm) 3매

법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업무대행자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 (2.5 x 3.5cm) 3매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참가인 등록증

허가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참가도매 시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등록일자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참가인 등록을 필요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인

【별지 제16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참가시장명			
	취급부류 (주품목)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5cm) 3매

【별지 제17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

신청인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사항	종전	변경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등록번호	산지유통인 등록증		사진(2.5×3.5 cm)
년도-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가시장명			
취급부류 (품목)			
등록일자			
<p>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준 수 사 항</p> <p>1. 등록된 도매시장내에서 농수산물을 출하할 때에는 본 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2.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내에서 농수산물 출하업무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3. 포전매매시에는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산 시 장 ①</p>			

【별지 제25호서식】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명						
도매시장법인명					대표자	
일 자	년 월 일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출하자	판매상대자	매매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산 시 장 귀하</p>						

【별지 제28호 서식】

거 래 성 립 최 저 가 격 신 청 서				
성명(출하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품 목	중량 및 규격	수 량	최저가격	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p>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도매시장법인명() 귀하</p>				

【별지 제29호서식】

관리번호		판매원표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						년 월 일(00:00)		정산	검산	기록	경매사
산지명											
출하총량						코드					
번호	출하자	품 목	중량 및 규격	등 급	수 량	가격 (경락)	총판매 대금	낙찰자번호 (매수인)			
운임 선급금				하역및 선별비		(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별지 제30호서식】

일 일 시 황 표

확 인 자: (인)

작 성 자: (인)

(법인명:)

년 월 일

부 류	품 목	거 래 단 위	등 급	경락또는 1차도매가격		거 래 동 향	주 출 하 자
				최 저	최 고		

※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31호서식】

표 준 정 산 서

정산일자						상호명				
출하자	성 명		귀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점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										
거래 방법	년	월	일	품목 및 품종	단위별 단량	등급	수량	단가	총거래 금액	매수인
계										
송금내역		송금액					수수료			
		은행명					운임			
		계좌번호					하역비			
		예금주					선금금			
							쓰레기 유발부담금			
							지불액			

【별지 제32호서식】

거 래 화 인 서					
품 목	단 위	반출물량	가 격	반출지(대상)	반출차량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인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67
----------	-----

제안년월일 : 2001. 6. 23.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을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수산부류 자본금 규모의 인상이 요구되어 이를 수정하고,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우 시장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등 조례 내용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을 시장이 정하도록 수정함(안 제4조)
-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 중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를 “상한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6조)
- 도매시장법인이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은 지정기간 만료 60일전까지로 수정함(안 제8조)

- 임원의 요건 중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임원 자격에 대하여 추가 요건을 정할 수 있다”를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9조)
- 도매시장법인의 수산부류 자본금 규모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인상 조정함.(안 제10조)
- 비치장부(서류) 중 “비품대장”을 “판매원표”로 수정함(안 제14조)
- 도매시장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17조)
- 중도매인의 최저 거래금액은 청과부류는 개인 2,000만원, 법인 4,000만원, 수산부류는 개인 1,5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수정함(안 제27조)
- “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금지” 제목을 “중도매인의 조합등의 구성”으로 하고, 전전한 거래형성과 발전을 위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34조)
- 관리비 등의 징수에 사용료 징수를 포함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 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한 납부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하고 독촉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85조)
-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제29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신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 중 “상한 수를”을 “상한 수 범위내에서 이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9조 중 “중복하여 임원”을 “중복하여 상근 임원”으로 하고, “제한하는 등 임원 자격에 대하여 추가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제2호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중 “비품대장”을 “판매원표”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도매시장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였거나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도표의 청과부류 금액란 중 “개인 2,500만원, 법인 5,000만원”을 “개인 2,000만원, 법인 4,000만원”으로 하고, 수산부류 금액란 중 “개인 2,000만원, 법인 4,000만원”을 “개인 1,5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즉시”를 “지체없이”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 금지)”를 “(중도매인의 조합등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거래형성과 발전을 위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37조 제1항 제6호 중 “제43조 및 제45조”를 “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38조 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39조 중 “중복하여 임원”을 “중복하여 상근 임원”으로 하고, “제한하는 등 임원자격에 대하여 추가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9조 중 “제37조”를 “제39조·제40조·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60조 중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렛트 적재”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품과 파렛트 적재”로 한다.

제85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76조, 제77조 및 제10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과 제1항”으로 하고, “해당자”를 “납부의무자”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사용료 등과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제3항의 독촉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지정 취소)①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이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시장은 중도매인이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8조를 제109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p> <p>①(생략)</p> <p>②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련동 및 관리동은 20:00시까지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37 716 683 909"> <thead> <tr> <th>구 분</th> <th>개장시간</th> </tr> </thead> <tbody> <tr> <td>하절기</td> <td>01:00~19:00</td> </tr> <tr> <td>동절기</td> <td>01:00~17:00</td> </tr> </tbody> </table> <p>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①(생략)</p> <p>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8조(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①도매시장법인이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구 분	개장시간	하절기	01:00~19:00	동절기	01:00~17:00	<p>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p> <p>①(원안과 같음)</p> <p>②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시장이 정한다.</p> <p>③시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①(원안과 같음)</p> <p>②..... 상한 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8조(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①.....60일.....</p> <p>②(원안과 같음)</p>
구 분	개장시간						
하절기	01:00~19:00						
동절기	01:00~17:00						

원 안	수 정 안
<p>제32조(중도매법인의 관리)①(생략)</p> <p>②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제32조(중도매법인의 관리)①(원안과 같음)</p> <p>②.....<u>지체없이</u>.....</p> <p>③(원안과 같음)</p>
<p>제34조(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 금지)</p> <p>①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p> <p>②~③(생략)</p>	<p>제34조(중도매인의 조합 등의 구성)</p> <p>①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거래형성과 발전을 위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③(원안과 같음)</p>
<p>제37조(지정절차)</p> <p>①(생략)</p> <p>1.~5.(생략)</p> <p>6. 제43조 및 제45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p> <p>②~④(생략)</p>	<p>제37조(지정절차)</p> <p>①(원안과 같음)</p> <p>1.~5.(원안과 같음)</p> <p>6. 제42조 및 제44조.....</p> <p>②~④(원안과 같음)</p>
<p>제38조(시장도매인의 재지정)①시장도매인이 지정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38조(시장도매인의 재지정)①.....<u>60일</u>.....</p> <p>②(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③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납기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76조, 제77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제사용료(부담금)의 징수에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08조(생략)</p>	<p>③제2항에 의한 사용료 등과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p> <p>④제3항의 독촉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108조(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지정 취소)①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이 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중도매인이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109조(원안 제108조와 같음)</p>